

의안번호	2204771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3.
추 계 번호	24A4380
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4.4억원(연평균 0.9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세무의 날(제20조의4)	88	88	88	88	88	440	8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의4 (세무의 날)	○ 매년 9월 9일을 ‘세무의 날’로 함 ○ 국가는 세무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0조의4(세무의 날)	○	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세무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재정소요는 기획재정부의 유사 행사인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의 최근 3년 집행액(2021~2023년)을 준용하여 추계함
 - 납세자의 날(3월 3일)은 1967년 세금의 날을 제정하여 최초 시행된 후 1977년 조세의 날, 1999년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개정하여 성실납세자, 세정협조자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기념행사를 진행함

[표 2]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(제2조 기념일 등[별표 1])

번호	기념일	날짜	주관 부처	행사 내용
2	납세자의 날	3. 3.	기획재정부	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(感謝)하고,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말한다.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유사한 ‘납세자의 날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한 수준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가정
 - 최근 3년간 납세자의 날 행사 추진 실적은 다음 [표 3]과 같고, 매년 평균 88백만원 수준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

[표 3] 최근 3년간 납세자의 날 행사 추진 실적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일시	장소	참석인원 규모	집행액		
				행사비	포상금	합계
2021	3.3(수), 14:00	서울 은행회관	90명 내외	18	30	48
2022	3.3(목), 14:00	서울 은행회관	90명 내외	30	30	60
2023	3.3(금), 10:00	코엑스 오디토리움	1,000명 내외	125	30	155
평균				58	30	88

자료: 기획재정부

- 개정안에 따라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4.4억원(연평균 0.9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세무의 날(제20조의4)	88	88	88	88	88	440	8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태정립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립	02-6788-4652	jitae@assembly.go.kr